

2016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1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13. 예정)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남자만 선발함

▪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1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1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임상심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분야 :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이상 자격 소지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무도유단자 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공인기관인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2. 시험 과 목

선발분야	임상심리 상담 분야	간호사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무도유단자 분야
시험과목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출제범위: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3. 시험 방 법

□ 전분야 응시자

○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 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4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56호) 및「교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 예규 제1025호)을 참조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예규/고시"⇒"예규"의 7페이지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4. 원서접수

□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8(화) 09:00 ~ 18:00(휴일 접수불가)

※ 응시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원서 접수처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선발기관 총무과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

- 일과시간 : 09:00 ~ 18:00 접수가능(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전국 교도소 구치소 오는 길 (<http://www.corrections.go.kr>) 참조

참 고 사 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 및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반드시 선발기관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예 : 대구교도소 지원자는 대구교도소에 응시원서 제출)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응시수수료는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우편접수 시에는 2016. 3. 8.(화)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봉투에 "응시원서재증" 표기)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 불가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8.(화)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6. 4. 1.(금)
- 필기시험 : 2016. 4. 23.(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5. 6.(금)
- 실기시험 장소·일정 공고 : 2016. 5. 23.(월)
- 실기시험 : 2016. 5. 31.(화) ~ 6. 3.(금)

○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8.(수)

○ 면접시험 : 2016. 6. 13.(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해당분야 응시 요건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자격증 사본

- 무도단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3)

7.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공통적용 가산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직렬별 가산점	변호사, 법무사	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8.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선발기관 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됨
-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 등 업무를 수행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아래참조)나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18, 5819,58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기 관 명	일 반 전 화		비 고
대 구 교 도 소	053	632 - 4501	내 선 204
부 산 구 치 소	051	324 - 5501	내 선 20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	874 - 4500	내 선 203
창 원 교 도 소	055	298 - 9010	내 선 204
부 산 교 도 소	051	971 - 0151	내 선 204
포 향 교 도 소	054	262 - 1100	내 선 204
진 주 교 도 소	055	741 - 2181	내 선 204
대 구 구 치 소	053	740 - 5200	내 선 203
김천소년교도소	054	436 - 2191	내 선 204
울 산 구 치 소	052	228 - 9700	내 선 203
경 주 교 도 소	054	740 - 3100	내 선 204
통 영 구 치 소	055	649 - 8911	내 선 204
밀 양 구 치 소	055	350 - 7700	내 선 204

【별첨 1】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분야	선발기관	선발인원		비고
			남	여	
교정9급 (교정)	임상심리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2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 청송군 소재)	2		
		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2		
		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소재)	2		

선발분야	채용직무	응시자격요건
임상심리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획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측정·평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분야	선발기관	선발인원		비고
			남	여	
교정9급 (교정)	상 담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3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 청송군 소재)	2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소재)	2		
		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소재)	2		
		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소재)	2		

선발분야	채용직무	응시자격요건
상 담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 교화 상담 수용자 생활지도 및 교육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 이상 자격 소지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분야	선발기관	선발인원		비고
			남	여	
교정9급 (교정)	간 호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3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소재)	2		
		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2		
		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소재)	3		
		김천소년교도소 (경북 김천시 소재)	3		
		울산구치소 (울산광역시 소재)	1		
		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소재)	3		

선발분야	채용직무	응시자격요건
간 호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분야	선발기관	선발인원		비고
			남	여	
교정9급 (교정)	사회복지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소재)	2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2		
		창원교도소 (경남 창원시 소재)	3		
		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2		
		대구구치소 (대구광역시 소재)	2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소재)	3		
		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소재)	3		

선발분야	채용직무	응시자격요건
사회복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의 사회복지 지원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분야	선발기관	선발인원		비고
			남	여	
교정9급 (교정)	무 도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소재)	3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 청송군 소재)	4		
		창원교도소 (경남 창원시 소재)	2		
		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2		
		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소재)	2		

선발분야	채용직무	응시자격요건
무 도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공인기관 발급 단증에 한함)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당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메일,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구지방교정청 2016년 제1회 경력경쟁(자격증)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교정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16. . .

성명 : (서명)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별첨 4】

응시원서 (원본)

본인은 대구지방교정청 시행 2016년도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기관			(한자)	
응시분야				
복수국적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생년월일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000원
전자우편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과 년)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교정직)임용시험		
응시기관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분야				
생년월일				
2016년 월 일				
대구지방교정청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현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으로 오셔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컴퓨터 작성 가능)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기관 : 응시를 희망하는 선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대구교도소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교도소”를 기재
3. 응시분야 : 응시를 희망하는 분야를 기재합니다.
(예시) 상담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으로 기재
임상심리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심리”으로 기재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최종학력 : 출신학교 및 학과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졸업·재학·수료·중퇴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성명·복수국적여부·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7.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8.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5,000원 상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원서접수기관에서 소인 처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